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 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제 2 조 【청약의 철회】
- 제 3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 4 조 【계약의 무효】
- 제 5 조 【계약내용의 변경】
- 제 6 조 【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 제 7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제 8 조 【계약의 소멸】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9 조 【제 1 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 제 10 조 【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제 11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제 12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해지】
- 제 13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 14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 1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 1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제 17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제 18 조 【해약환급금】
- 제 19 조 【배당금의 지급】
- 제 20 조 【소멸시효】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 제 21 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제 22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제 23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 24 조 【주소변경 통지】
- 제 25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제 26 조 【대표자의 지정】
- 제 27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제 28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 29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제 30 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제 31 조 【계약내용의 교환】
- 제 32 조 【약관대출】

제 6 관 분쟁조정 등

- 제 33 조 【분쟁의 조정】
- 제 34 조 【관할법원】
- 제 35 조 【약관의 해석】
- 제 36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 제 37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 38 조 【준거법】
- 제 39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 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 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 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하 “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 제 6 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 5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 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8 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 1 항 제 4 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6 조 【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후 보험가입금액은 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정합니다.

제 7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8 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 3 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이하 '장애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1 급의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 1 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 1 회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 22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 21 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 11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 12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는 제 32 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자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 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12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 3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 1 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 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 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13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 12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승낙거절시 보험료 반환, 책임개시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4 항, 제 9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 21 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 22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4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 1 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중 제 2 급 내지 제 3 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4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제 2 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14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애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④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부터 1 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 항 및 제 14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 1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로부터 2 년이 경과 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서 장애분류표중 제 1 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 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 1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제 17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 급 내지 제 3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 18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19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20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21 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 3 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 21 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 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②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 ③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 ⑤ 제 21 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23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건강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 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 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4 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25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26 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 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27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 14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28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애인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29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28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 22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 3 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 3 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 3 의 의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제 4 항에 의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 18 조(해약환급금)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제 20 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 30 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14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29 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1 조 【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 조, 동법 시행령 제 12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6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 32 조 【약관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③ 회사는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 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 33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36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7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38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39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약관 제 14 조)

-. 사망보험금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계약보험 가입금액의 100%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3 호, 1995. 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0 - X59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예방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한 전염병	

※ 제외사항

-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I23.3)
-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 R99 에 분류가 가능한 것
-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식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 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 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 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 내지 7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 내지 7 중 또는 제 4 급의 5 내지 11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3 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 대관절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 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 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 하였을 때
제 4 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4 급	10. 한손의 5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 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 5 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 대관절중 2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 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 발가락 내지 4 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5 급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제 6 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 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 손가락 또는 2 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 발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분류해설)

1. 장애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애의 정의

장애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애의 평가시 하나의 장애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제 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 지침에 의한 장애인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 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쭈시간호’

‘쭈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 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애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애”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애, 굴절 장애, 안구운동 장애, 조절 장애,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ㄱ, ㅋ, ㆁ),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ㅊ), 후두음(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 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 데시벨 (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애”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 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 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장식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 의 영 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 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애후 운동범 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Sigma \times$ 비례치)이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 하여 35 이상의 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 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애”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애’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 (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cm 이상 또는 직경 5 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cm 이상 10 cm 미만 또는 직경 2 cm 이상 5 cm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애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萎 :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2 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 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부위 ”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 1 급의 5,6,7,8,9, 제 2 급의 3,4,5, 제 3 급의 8 또는 제 4 급의 12 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 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

“영구히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제 1 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 조 【특약의 소멸】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1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 13 조 【해약환급금】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4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 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 5 관 기타사항

제 16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제 1 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2 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 1 회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3 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 6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별표 3 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이하 ‘장애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1 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 1 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제 2 급 내지 제 3 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제 2 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 1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 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 1 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4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항 제 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조에
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 14 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 13 조(해약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 5 관 기타사항

제 16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사망보험금(약관 제 10 조)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 만원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 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무배당 신재해사망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무배당 신재해사망특약 약관

제 1 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 조 【특약의 소멸】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1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 13 조 【해약환급금】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 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 5 관 기타사항

제 16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신재해사망특약 약관

제 1 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2 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 1 회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3 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 6조【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별표 3 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이하 ‘장애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1 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 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제 1 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재해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1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제 2급 내지 제 3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제 2 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애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④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 1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 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 1 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 1 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14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 일 이내의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 13 조(해약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 5 관 기타사항

제 16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재해사망보험금(약관 제 10 조)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재해로 인하여장애분류표 중 제 1 급의 장애시	1,000 만원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 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무배당가족수입보장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약관

제 1 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 조 【특약의 소멸】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1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 13 조 【해약환급금】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 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 5 관 기타사항

제 16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약관

제 1 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2 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 1 회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3 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 6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별표 3 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이하 “장애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 1 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 1 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가족수입연금을 지급합니다.(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

제 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장애분류표 중 제 2 급 내지 제 3 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제 2 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⑤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가족수입연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드리며, 최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하 '보험금 지급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가족수입연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⑥ 제 5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족수입연금의 지급기간이 5 년미만이 될 경우 보험금 지급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 년간을 가족수입연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⑦ 가족수입연금의 경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 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 1 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 14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제 2 회 이후에 지급되는 가족수입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 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 ④ 제 13 조(해약환급금)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⑤ 회사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의한 제 2 회 이후에 지급되는 가족수입연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 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기간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3. 보험금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 5 관 기타사항

제 16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가족수입연금(약관 제 10 조)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 급의 장해시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매월 10 만원 (최소 5 년간 보증지급)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 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무배당 3대성인병보장특약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무배당 3대성인병보장특약 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조 【특약의 무효】

제 3 조 【특약 내용의 변경】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 조 【특약의 소멸】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 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1 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2 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3 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4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6 조 【해약환급금】

제 4 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17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8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 19 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 6 관 기타사항

제 20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3대성인병보장특약 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2 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3.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합니다)

제 3 조 【특약 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6 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별표 2 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이하 ‘장애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1 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 1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 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3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 3 의 분류번호 C44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11 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12 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 5(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arinCT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 6(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3대성인병치료자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 2 급 내지 제 3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4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3 대성인병치료자금은 암,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 14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3 대성인병치료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 16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17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 진단확정 후 암 진단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그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 계약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8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 진단서, 상피내암 진단서, 뇌졸중 진단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19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18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지급지연율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 16 조(해약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 6 관 기타사항

제 20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3대성인병치료자금 (약관 제 14 조)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각각에 대해 1 회에 한함)	500 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 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 만원

(별표 2)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별표 3)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 3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 호, 1995.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 ~ 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생물	C43 ~ 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 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 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 ~ 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 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 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제 4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제 3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제 1993-3 호 1995.1.1 시행)에 의해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제 4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5)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은 제 3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 호, 1995.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거미막하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제 4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은 제 3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 호, 1995.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속발성 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제 4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신재해장해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무배당 신재해장해특약약관

제 1 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6 조 【특약의 소멸】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1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 13 조 【해약환급금】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 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 5 관 기타사항

제 16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신재해장해특약약관

제 1 관 보험계약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2 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 1 회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 조 【특약 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별표 3 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이하 ‘장애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 1 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제 11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급여금의 총한도까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 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별표 3 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이하 ‘장애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2 급 내지 제 6 급의 장애(이하 ‘장애’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급여금(별표 1 ‘급여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1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애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②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장애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장애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애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④ 제 3 항에서 규정한 재해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장애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이미 재해장애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애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애에 해당하는 재해장애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애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⑤ 제 3 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 4 항에 규정하는 장애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에 대하여는 이미 재해장애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4 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재해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2. 제 1 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또는 재해장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애

⑥ 장애로 인한 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로 합니다.

⑦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12 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 1 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 13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항 제 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 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제 16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급여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 10 조)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제 2급 내지 제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제 2 급 : 700 만원 제 3 급 : 500 만원 제 4 급 : 300 만원 제 5 급 : 150 만원 제 6 급 : 100 만원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 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제 2 조 【특약의 책임개시일】
- 제 3 조 【피보험자의 범위】
-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6 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 제 7 조 【해지특약의 부활】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 8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 9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 10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 11 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 제 12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제 13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 14 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 5 관 기타사항

- 제 15 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경우의 특칙】
- 제 16 조 【다른 특약의 취급】
- 제 17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 8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1 조 제 2 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3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 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규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 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 7 조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8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제 5 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중에 의료법 제 3 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하 '여명'이라 합니다)이 6 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9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약관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 8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1 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 12 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 13 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금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호적상의 배우자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 13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5 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5.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6.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7.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4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13 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của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후 10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확인이 끝날때까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확인이 끝날때까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제 15 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① 제 8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8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제 8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 17 조(다른 특약의 취급)의 규정에 관계없이 청구일 현재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 개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3 항에 규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⑤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경우에도 제 9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 16 조 【다른 특약의 취급】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7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계약순연부활특약 약관

계약순연부활특약 약관

제 1 조 【 특약의 적용 】

제 2 조 【 계약의 부활 】

제 3 조 【 부활보험료 】

제 4 조 【 배당금의 지급 】

제 5 조 【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

계약순연부활특약 약관

제 1 조 【 특약의 적용 】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자가 해지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일을 늦추어(이하 ‘순연(順延)’이라 합니다)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2 조 【 계약의 부활 】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1 회에 한해서 이 특약에 의하여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일, 납입기간 및 만기일 등은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및 해지기간을 통산한 기간’만큼 순연됩니다.

단, 주계약의 납입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일정기간이 아닌 일정연령까지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 일정연령은 순연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 부활보험료 】

계약자가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 1, 2 호의 합계액을 부활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부활후 보험료

제 2 조(계약의 부활)에 정한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보험료 1 회분

2. 정산금액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해지된 순연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및 그 이자를 차감한 금액

단, 해약환급금과 그 이자는 순연전후 각각 해당 계약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4 조 【 배당금의 지급 】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시 부활전? 후 계약의 배당금은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부활전 계약의 배당금은 부활전 이미 발생된 배당금으로 합니다.

2. 부활후 계약에서 향후 발생하는 배당금은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5 조 【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의해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주계약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